

#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10.

발의자 : 박광온 · 송갑석 · 권칠승

김영주 · 전현희 · 김종민

이춘석 · 윤관석 · 김현권

송옥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,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(語文)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, 제7조제1항, 제9조, 제12조제1항, 제13조 및 제16조제2항).

##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“차주”(借主)란”을 “차용인(借用人)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“전대차주”(轉貸借主)란”을 “전대차용인(轉貸借用人)이란”으로, “차주가”를 “차용인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차주”를 “차용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중 “차주가”를 각각 “차용인이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13조 중 “전대차주”를 각각 “전대차용인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차주, 전대차주”를 “차용인, 전대차용인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“차주”(借主)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대주(貸主)에게 채무(보증채무는 제외한다)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, 대한민국법인 또는 그 채무를 인수(引受)한 자를 말한다.	8. 차용인(借用人)이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9. “전대차주”(轉貸借主)란 대한민국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(轉貸)하여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	9. 전대차용인(轉貸借用人)이란----- -----[차용인]----- ----- ----- -----.
10. “대주”(貸主)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차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정부 등, 외국법인 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자를 말한다.	10. ----- -----[차용인]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공공차관협약의 체결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	제7조(공공차관협약의 체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


